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디딤 백년50 EMP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사항: ① O클래스 신설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5. 4. 2.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클래스 신설	〈신 설〉	기타: 디폴트옵션,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 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사 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설립되 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클래스 신설	〈신 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디폴트옵션(O)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클래스 신설	〈신 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디폴트옵션(O)
2.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신 설〉	2025.04.02 : O클래스(디폴트옵 션) 신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트러스톤자산운용

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클래스 신설	〈신 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종류형 구조	클래스 신설	〈신 설〉	기타: 디폴트옵션,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클래스 신설	〈신 설〉	2) 종류별 매입자격 기타: 디폴트옵션,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신설	〈신 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신설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신 설〉 - 연간 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2025. 2. 28. 기준 연간 0.093%

	의 총보수·비용 예상 치 변경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 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신 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 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u>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u>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트러스트자산운용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클래스 신설	〈신 설〉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디폴트옵션(O)</u>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클래스 신설	〈신 설〉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디폴트옵션(O)</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연혁 추가	-	<u>2025. 2. 28. 기준</u>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 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연혁 추가	-	<u>2025. 2. 28. 기준</u>